

## **장애가 있는 경우 DHS(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에 Reasonable Accommodation을 요청하는 방법**

### **RA(Reasonable Accommodation)이란?**

RA(Reasonable Accommodation)는 변경된 시스템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DHS와 같은 정부 기관은 장애를 가진 이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절차와 규정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장애가 있고 DHS의 보호소가 필요하다면 DHS 측에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필요한 DHS 주거지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DHS에서 제공할 수 있는 RA에는 장애에 따라 필요한 요소에 맞추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장애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란 “주된 생존 활동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제한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로 정의됩니다. 일상 생활에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ADA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 **DHS에서 RA를 받을 나의 권리는?**

DHS에서 제공하는 주거지가 필요하나 DHS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다면 RA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HS는 당신이 주거지 제공자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기 전이라고 해도 당신과 가족에 대해 장애와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RA가 필요한 사유는 대상자가 휠체어 또는 다른 보조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나 청각에 문제가 있거나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어떤 유형의 RA를 받을 수 있을까?**

각각의 RA는 요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요청자가 필요한 RA의 유형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RA의 예시로는 오랜 시간 대기하기가 힘든 경우 DHS 사무소에서 대기 시간을 줄여준다던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경우 엘리베이터를 제공한다거나 더운 날씨에 호흡이 힘든 경우 에어컨을 제공한다거나 알러지나 질병으로 인해 특정한 식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하는 등이 있습니다.

## RA는 어떻게 요청할까?

RA를 요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호소 직원에게 요청하거나 [DHS Reasonable Accommodation Request Form\(DHS RA 요청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원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애가 ‘분명’하거나 눈에 띄는 경우 필요한 도움을 받는 데에 문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라면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1층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장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RA 요청을 위해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RA 요청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경우(서류 필요 시) 보호소 직원은 요청 및 관련 서류를 DHS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DHS 직원이 RA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RA 요청에 필요한 DHS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장애가 분명한 경우 DHS의 승인을 받기 위한 RA 요청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DHS 측에서 이전에 승인한 RA에 대한 서류 및 여러분의 장애를 입증할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 정보를 다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DHS에서 보존하고 있어야 할 자료를 분실한 경우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RA 요청을 위해 DHS 제출용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여러분의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또는 다른 의료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여야 합니다.

RA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료 기록과는 다릅니다. 진료 기록보다는 훨씬 제한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의 세 가지 정보가 포함된 편지입니다.

1. 필요한 RA
2. 관련된 장애
3. 그리고 장애와 요청한 RA와의 연관성.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요청한 RA가 어떻게 보호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없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는 아니나 편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4. RA가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예: 증상의 악화, 의사의 진료를 더 자주 받아야 함, 투약을 늘려야 함)
5. 요청한 RA를 받지 못했을 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문제
6. DHS 측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편지 작성자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 **DHS에서는 내 장애 정보를 어떻게 취급할까?**

DHS에서는 공유해 주신 장애 관련 정보를 RA 요청 승인 여부에만 사용합니다. DHS는 귀하의 질병 이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RA 요청과 관련한 정보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RA 요청과 관련해 DHS에서 받는 정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이는 귀하의 허락 없이 DHS가 다른 사람 혹은 기관과 장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DHS에서 RA 요청과 관련해 귀하의 담당의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HIPAA에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HIPAA는 귀하의 담당의로 하여금 의료 기록에 대해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DHS가 의사와 이야기하게 허락할지는 귀하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RA 요청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DHS가 RA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얼마나 걸릴까?**

DHS는 RA 요청에 대한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내려야 합니다. DHS가 RA 요청에 대응하는 시간은 귀하의 장애 유형 및 RA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DHS는 RA 요청을 거절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RA가 없는 경우 보호소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면 RA 요청에 대해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DHS는 공식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임시 Ra”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시 Ra” 는 공식으로 승인되기 전에 DHS에서 요청 즉시 RA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DHS는 RA 요청이 즉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귀하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시 RA를 제공해야 합니다. DHS에서 정보를 검토한 뒤에 제공된 RA 를 유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RA 요청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A 요청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RA 요청 진행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까?” 를 참조해 주십시오)

### **DHS에서 RA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 다음은?**

DHS가 RA 요청을 승인한 경우 보호소에서 공식 확정 서류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원치 않는 경우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DHS에서는 RA 요청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RA 요청이 승인되면 모든 보호소에서 승인된 RA 를 제공해야 합니다.

DHS에서 요청을 거절했으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왜 DHS의 결정이 부당한 지 편지를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RA 요청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추가 정보가 있다면 포함해 주십시오. 귀하의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추가 편지를 포함하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DHS에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거절 조치가 올바른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DHS의 요청 거절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소 직원이 이의 신청 양식 작성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청 거절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RA 요청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A 요청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RA 요청을 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질까?**

DHS 측에서 현재 보호소에서 RA 요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RA 요청 후에 귀하를 다른 방이나 새 보호소로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RA 요청이 불필요하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 RA 요청을 다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때까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RA 요청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RA 요청 진행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까?**

Legal Aid의 Homeless Rights Project 800-649-9125로 전화해 RA 요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omeless Rights Project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Disability Affairs [DisabilityAffairs@dss.nyc.gov](mailto:DisabilityAffairs@dss.nyc.gov)에 연락해 RA 요청 과정에 대해 DHS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RA 요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DHS의 누군가가 귀하를 차별한다고 생각이 될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DHS Applicants and Clients with Disabilities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귀하는 원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경우 DHS는 이에 맞는 서비스와 해당 언어로 된 안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실 이민 부서 언어 접근성 웹페이지](#) 또는 Legal Aid Society의 [내 언어 접근성 권리에 대한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